

애틀랜타 한인 간호사 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재미 애틀랜타 한인 간호사 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Atlant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미국 조지아주 비영리 단체로 회원 간의 친목, 상호 협조와 권익 옹호 및 전문적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봉사하며 한인 사회 단체와 우의를 도모하되 정치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3조(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애틀랜타 및 미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혈통의 사람으로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타국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원로 간호사 및 전 현직 간호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제4조(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본 협회 회칙 및 총회, 임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6조(회의): 본 협회는 아래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늦어도 총회 4주 전에 장소, 일시를 공개해야 한다. 임시 총회 및 이사회는 회장의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시 총회나 이사회는 이사 및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3개월에 1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본 협회의 조직)

1.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 감사, 홍보 & IT부, 특별사업 & 기획부, 교육 & 장학부, 고문, 이사장, 이사
2. 필요시에는 회장이 추가 부서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1. 회장 및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RN)로서 현직 또는 은퇴한 간호사로 한다.
3. 부회장은 현직 또는 은퇴한 간호사로서 이사장의 동의 하에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총무, 재무 및 서기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각 부서의 차장과 부원은 부장이 임명한다.
6. 이사장, 고문, 감사는 이사회에서 인선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7. 고문은 전 회장과 전 이사장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8. 임원 결원 시 회장이 재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대행한다.

제9조(임원의 의무)

1. 회장: 본 협회를 대표하고 의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결원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
 - 가) 본 협회의 회장단을 협조하며 운영을 위하여 돕는다.
 - 나) 회장과 부회장 결원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원 관리를 위한 제반사무를 집행한다.
5. 서기: 본 협회의 회의 기록 전반을 담당하며 각종 제반 문서를 작성 보관한다.
6. 재무: 본 협회의 예산과 결산의 회계 사무를 담당하고 회계 문서를 보관하며 총회 시 한달 전에 감사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 때 재무보고를 한다.
7. 홍보 & IT부장: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해 정보와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회원 확보를 위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또, 간담회, 시사회, 광고 및 지역 사회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한다. 협회의 각종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등)를 관리한다
8. 특별사업 & 기획부: 협회 중점 사업의 계획과 진행을 도모한다
9. 교육 & 장학부: 각종 세미나 준비와 섭외 및 장학위원회의 협조하에 장학 사업을 담당
10. 지엽 기관 부장: 병원, 지역사회, NP 그룹, 학교, 은퇴 그룹 등
11. 고문: 본 협회의 모든 자문을 담당한다.

12. 감사: 본 협회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고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13. 직책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이 그 직임을 행할 수 없거나 협회에 불이익과 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임원 이사회 모임을 통해 자격이 정지된다.

제4장 재정

제10조(재정)

1. 본 협회의 재정은 회비, 이사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3. 본 협회의 회비의 증감은 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 회원 연회비는 \$50이며 평생회원 회비는 \$400로 한다.
5. 이사의 회비는 연 \$200 이상으로 한다.
6. 예산안은 회장단이 작성하여 임원이사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7. 재정지출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며 특별 지출은 회장이 임원진과 상의한다.
8. 재정지출은 회장의 승인하에 회장과 재무의 서명을 요한다.

제5장 회칙 개정

제11조(회칙 개정)

1. 회칙 개정 위원회는 현 임원단과 이사회로 구성한다
2. 회칙은 회칙 개정 위원회가 개정안을 작성하며 정기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1차 회칙 수정 04/29/2023

제 2차 회칙 수정 02/17/2024

제 3차 회칙 수정 02/22/2025

애틀랜타 한인 간호사 협회 장학위원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 본 장학회는 애틀랜타 한인 간호사협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 장학회는 후배양성과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회칙은 장학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장학 선발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및 임기

제 3조 : 위원회는 현 임원단과 이사회로 구성한다

제 4조 : 위원장은 현 이사장으로 한다.

제 5조 :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이사회에서 한 명을 선출해서 차기 이사장이 선출 될 때까지 잔임 기간을 대행한다.

제 3장 장학생 자격 및 선정

제 6조 : 장학금은 한국 혈통을 가진 자로 간호학을 전공하며 타에 모범이 되고 목적이 뚜렷하며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 7조 : 장학생은 2명 이상으로 하며 전반적 간호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 8조 : 위원회는 그 추천을 위하여 장학생의 모집날짜를 8월에 공고하고 10월말에 마감한 후 신청자를 전형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조 : 장학금 지급은 일인 일회에 한하며 학교명의로 지급되며 연말 파티에서 수여한다. 단 장학금 수여 참가자 개인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여행비용, 숙박).

제 4장 장학기금의 조달

제 10조 : 장학금은 본 협회 기금 외에 회원 및 기타 독지가의 기부금이나 장학기금모금을 위한 특별행사에서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5장 장부 기록의 관리 및 보존

제 11조 : 장학생 선정 및 지급 기타 장학선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 장부 서류 및 기록은 교육&장학부와 협조하에 관리하며 최소한 5년간 보관한다.

제 12조 : 위원장은 임기 만료후 4주이내에 제반서류 및 장부를 차기 위원장에게 인계한다.

제 6장 업무보고 및 감사

제 13조 : 장학위원회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 11조에 의한 장부 및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제 7장 회칙 개정

제 14조 : 이 회칙은 본협회 회칙 개정과 동일한 과정을 요한다.

이 회칙은 2025년 2월 22일 실시된 3차 정기 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져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으며 2025년 2월 23일 부터 실행 된다.